

의안번호	2215424
의 퇴 인	서천호의원
회 답 일	2026.6.10.
추계번호	25B7312

댐 하류·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7대 댐 피해지역 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,1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5,500만원(연평균 1,100만원)으로 추계됨
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7개 댐 피해지역 구제심의위원회 (안 제13조)	11	11	11	11	11	55	11

주: 1.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고,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 (7개 댐 피해지역 진상조사위원회)	7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7개 댐 피해지역 진상조사위원회(이하 “진상조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(제1항)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제2항) 1.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.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 3. 7개 댐 과다방류 피해 관련 법령, 제도, 정책,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	외무규정
2	안 제7조 (진상조사)	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다)를 할 수 있다.(제1항)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제2항) 1.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. 7개 댐 방류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. 7개 댐 과다방류 피해 관련 법령, 제도, 정책,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	의무규정
3	안 제13조 (7개 댐 피해지역 구제 심의위원회)	7개 댐 과다방류 피해 관련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7개 댐 피해지역 구제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(제1항)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제2항) 1.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·의결에 관한 사항 2. 피해자와 7개 댐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.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,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·지원 대상·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.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	의무규정
4	안 제16조 (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등)	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득 감소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, 시설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의 보상을 위한 지원금(이하 “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하여야 한다.(제1항) 지원금 지급을 위한 피해 범위 산정 기준,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2항) 국가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3항)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·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(제4항)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(제5항)	의무규정
5	안 제18조	국가는 7개 댐 과다방류 피해로 침체된 7개 댐 피해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(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지원)	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.	
6	안 제20조 (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·시행)	국가등은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(제1항) 1. 성별·나이·직업 등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.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, 삶의 질 향상 3. 건강·복지·문화·체육 등 7개 댐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,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국가등은 7개 댐 피해지역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·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2항)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.(제3항)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.(제4항)	의무규정
7	안 제21조 (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)	국가등은 7개 댐 피해지역에 관한 자료를 수집·보존하고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8	안 제23조 (사무국의 설치 등)	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(제1항)	의무규정
		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.(제2항)	
		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(제3항)	재량규정
		국가등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.(제4항)	의무규정
9	안 제29조 (운송비·여비 등)	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업무,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5항)	
		이 법의 규정에 따라 증언·감정·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·여비·일당·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.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 (7개 댐 피해지역 진상조사위원회)	×	·제3호 -진상조사위원회가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원인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및 관련 법령, 제도, 정책 등에 대한 개선·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.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수행될 진상조사의 대상·규모 및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체적 업무범위·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해당 사항들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2	안 제7조 (진상조사)		
3	안 제13조 (7개 댐 피해지역 구제심의위원회)	○	·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함
4	안 제16조 (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등)	×	·제3호 -국가가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의 보상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.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피해 보상 지원금의 지급 대상·규모 및 지급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개정안에서는 해당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5	안 제18조 (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지원)		
6	안 제20조 (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·시행)		
7	안 제21조 (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)		·제3호 -국가가 7개 댐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,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재난예방교육 사업 등을 개발·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.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마련될 특별지원방안·프로그램 및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, 지원 대상 및 범위, 지원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개정안에서는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8	안 제23조 (사무국의 설치 등)		·제3호 -개정안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설치·운영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.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무국 직원의 규모·구성 및 업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9	안 제29조 (운송비·여비 등)		·제3호 -개정안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등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·여비·일당·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.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비용 지급 대상의 범위, 지급 규모, 지급 기준 및 지급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개정안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, 현시점에서는 비용 지급 대상자의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본 추계는 제정안에 따른 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한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
-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구제심의위원회의 위원 참석 수당 지급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함
- 한편, 제정안 제23조에 따라 구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사무국의 업무·규모·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제외함

- 본 추계에 필요한 구제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는 유사사례인 「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‘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’¹⁾의 회의개최 횟수를 준용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 - 제정안에 따라 구제심의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제정안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,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가정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본 추계에서는 민간위원 수, 참석수당, 개최횟수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
 - 본 추계에서는 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,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유사사례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및 회의 개최 횟수를 준용함
 - (위원 수) 제정안에서는 구제심의위원회의 정원을 15인으로 규정하면서 재정경제부, 행정안전부, 기후에너지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 및 7개 댐 피해지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의 공무원 12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²⁾, 회의 참석 수당 지급대상인 민간위원은 3인으로

1) 제13조(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) ① 국무총리는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·의결에 관한 사항
2.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
3.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,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·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
4.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·개정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③ 국무총리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
2) 안 제14조(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재정경제부, 행정안전부, 기후에너지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

2. 7개 댐 피해지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

가정함

- **(회의개최 횟수)** 회의 개최 횟수는 유사사례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 연 평균 12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준용하여 연 1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－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2020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총 76회임
- **(회의참석 사례금)**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(참석수당 30만원³⁾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－ 이때,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**(추계 결과)** 제정안에 따라 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5,500만원(연평균 1,1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2] 구제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: 2027~2031년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민간위원 수(A, 명)	3	3	3	3	3	—	—
회의개최 횟수(B, 회)	12	12	12	12	12	—	—
회의참석 사례금(C, 만원/명·회)	30	30	30	30	30	—	—
추가재정소요(D=A×B×C, 백만원)	11	11	11	11	11	55	11

주: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,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고,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

3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
4. 그 밖에 7개 담 과다방류 피해의 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)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,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,000원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,000원내에서 집행(기획예산처,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, 2026. 1. p.150.)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